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부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전년도 대비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100분의 90을, 증가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지급하는 등 교부금에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율 산정 방법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율 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제2항에 따른 교부비율을 매년 7월 31일까지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교부비율은 다음 연도의 시·도별 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은 폐기물의 소각·매립 처분량(영 별표5의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대상은 소각·매립 처분량 산정 시 제외한다)에 소각잔재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값(이하 “소각·매립 처분량 보정값”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소각의 경우: 0.8321

2. 매립의 경우: 1

③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부비율의 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시·도지사는 소각·매립 처분량 등 제2항에 따른 소각·매립 처분량 보정값의 산정 및 제3항에 따른 교부비율의 조정 등에 필요한 자

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비율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한 교부비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4]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교부비율 조정방법(제20조의2제3항 관련)

1. 시·도별 소각률에 따른 교부비율조정값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교부비율 조정값}(\%p) = \frac{10}{100 - Kai} \times (\text{소각률}(\%) - Kai)$$

2. 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교부비율조정값에 10%p를 가산한다.

비고

1. 제1호에 따른 교부비율조정값의 최소값은 -10%p로 한다.
2. Kai: 전체 시·도의 평균소각률(Average Incineration ratio)
3. 소각률은 소각 처분량 보정값을 소각·매립 처분량 보정값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만, 영 별표 5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대상은 소각률 산정 시 제외한다.
4. 교부비율조정값은 소수점 이하 3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번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0조의2(폐기물처분부담금 등</u> <u>의 교부비율 산정 등) ① 환경</u> <u>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제1호</u> <u>각 목 및 제2항에 따른 교부비</u> <u>율을 매년 7월 31일까지 확정하</u> <u>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u> <u>다. 이 경우 통보된 교부비율은</u> <u>다음 연도의 시·도별 교부금을</u> <u>산정할 때에 적용한다.</u> <u>② 영 제25조제1항제1호 각 목</u> <u>에 따른 폐기물 소각·매립 처</u> <u>분량은 폐기물의 소각·매립 처</u> <u>분량(영 별표5의 제5호부터 제9</u> <u>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u> <u>부담금의 감면 대상은 소각·매</u> <u>립 처분량 산정 시 제외한다)에</u> <u>소각잔재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u> <u>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보정계</u> <u>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값(이하</u> <u>“소각·매립 처분량 보정값”이</u> <u>라 한다)으로 한다.</u> <u>1. 소각의 경우: 0.8321</u> <u>2. 매립의 경우: 1</u> <u>③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부</u>

비율의 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시·도지사는 소각·매립 처분량 등 제2항에 따른 소각·매립 처분량 보정값의 산정 및 제3항에 따른 교부비율의 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